

수 신 : 정회원사

참 조 :

제 목 : 건설현장 사고 신고제도 준수 협조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참여자(건설사업자 등)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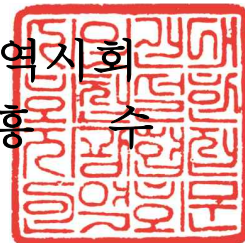
* 건설현장에서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등)

3.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 자료 1부. 끝.

※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incheon.kosca.or.kr/) - 협회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 장 조 홍 수



담당자 팀원 최현탁 선임 임윤환 파트장 유태원 파트장 노명숙 팀장 조태원
시행 전건협 인천 제793호(2026.10.13)

우 21574/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구월동, 전문건설회관)/ <http://incheon.kosca.or.kr>
전화 032-428-7331 / 전송 032-428-7334 / 전자우편 qrt9373@kosca.or.kr